

“소비자피해보상기준” 개정 안내

재정경제부에서는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, 애완견판매업이 포함된 17개 품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였기에(관보개재후 8월1일부터 시행)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이번호에서는 애견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합니다. 참고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부 고시)*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(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)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로 정한 피해보상기준입니다.

*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1985. 12월 제정되었고, 금번 개정은 10차 개정이며, 총 111개 업종 549개 품목에 대해 고시

1. 소비자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부 고시)

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란?

- 소비자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부 고시)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사전에 양 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보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,
-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·공정하게 처리하고,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법령에 정한 방법(관계부처 등 협의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필수 심의사항)에 따라 제정된 기준입니다.(소비자보호법 제12조)
- 이 규정은 소비자·사업자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, 소비자보호원·소비자단체 또는

행정기관에서 소비자피해를 상담·합의권고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됩니다.

※ 111개 업종, 549개 품목(2003.8.1부터 온수세정기(비데기), 연수기 등 2개 품목 추가)

■ 물품·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방법

- 소비자가 물품·용역에 대한 피해나 불만을 사업자에게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, 민간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(전화 3460-3000)에 소비자상담·정보제공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이 경우 소비자단체나 소보원은 소비자 불만·피해의 사실여부와 정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합의를 권고하며
 -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(소비자단체협의체에도 설치예정)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.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(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은 민법상 화해)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- 만일, 당사자가 조정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. 이경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민사소송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.

2.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애완견 관련 사항

■ 애완견의 폐사시 피해보상기준 강화

○ 종전 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은

-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고
- 판매후 14일이내 폐사시,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되, 사인(死因)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입가의 50%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미국(Pet Lemon Law)의 경우에서처럼

- 구입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시 판매시점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,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며(단,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)
- 구입후 15일이내 질병발생시에는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또한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, ②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, ③혈통, 성,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,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,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,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, ⑦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■ 애완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

○ 어린 강아지는 아직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후 90일 이하의 강아지는 가급적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- 애완견 구입시 병력과 예방접종 여부, 구충제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병원의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,

- 진단시 이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교환을 요구하고, 특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파보바이러스 장염이 판매처에서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감염된 것인지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 진단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.

○ 일부 사업자들은 향후 강아지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.

○ 애완견의 구입금액, 구입날짜 등을 기재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,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질병 치료여부, 현금환불이나 교환내용 등도 함께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.

■ 판매업소 책임하에 치료한다는 규정

○ 이는 동물병원에서 치료한다는 것으로 애견 판매업자가 이를 어겨 불법진료를 할 시에는 수의사법에 의한 처벌을 받음

○ 이 규정은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매업소의 책임이라함은 진료비 및 치료동물병원의 선택 등을 표현한 것임

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

품종	현 행			개 정 (안)		
	피해유형	보상기준	비고	피해유형	보상기준	비고
24. 애완견 판매업	<p>1)판매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</p> <p>2)판매후 14일이내 폐사 -사인이 불분명 한 경우</p> <p>-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</p> <p>3)판매 후 14일 이내 질병발생</p>	<p>-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(단,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잘못에 의한 경우 는 제외)</p> <p>-소비자가 구입가의 50%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(단, 사업자가 질병발생 시 즉시 통보해줄 것을 고지 하였으나,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)</p> <p>-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 는 보상제외,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</p> <p>-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· 다만, 판매업 소 관리 중 판매일로부터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 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, 4일 이후에 폐사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)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</p>		<p>1)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</p> <p>2)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</p>	<p>-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(단,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)</p> <p>-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 에게 인도 · 다만, 판매업 소 관리 중 폐사시에 는 동종의 애완견 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</p> <p>-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· 다만, 판매업 소 관리 중 판매일로부터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 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, 4일 이후에 폐사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)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</p>	<p>(신설) -판매업자는 애완 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자료 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</p> <p>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견의 출생 일과 판매업자 가입수한날 ③ 혈통, 성, 색상 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 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 기록 및 약물 투여 기록 등 ⑥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 금액과 구입 날짜</p>